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8일, 백승아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12.18.)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2.23.) :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2.6.) :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5.2.18.)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백승아 의원)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정원·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원장·원감의 학급담당기준, 원감 미배치 허용기준, 학급담임교사·방과후 과정 담당교사·보직교사 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집과 같이 학급 담임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 초·중등 교과

전담교사와 같이 유치원 교육과정 내 영역별(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담당교사,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 놀이중심·유아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영유아 교육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사의 배치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서는 시·도 및 유치원 운영의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직원의 종류와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에 모두 규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통해 관할청(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를 반영한 교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시도·감독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② (생 략)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u>정 원 ·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u>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정 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 · 감독기관 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 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